

2023. 2. 21.(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3. 2. 23.

충남대학교 학칙

전문 개정	1963. 6.14. 훈령 제1호	제43차 개정	2014. 3.31. 규정 제1627호
제1차 개정	2006. 3. 1. 규정 제1269호	제44차 개정	2014. 4.11. 규정 제1631호
제2차 개정	2006. 5. 1. 규정 제1283호	제45차 개정	2014. 5.26. 규정 제1633호
제3차 개정	2006. 6.28. 규정 제1292호	제46차 개정	2014. 6.25. 규정 제1639호
제4차 개정	2006.12. 7. 규정 제1311호	제47차 개정	2014. 8.28. 규정 제1643호
제5차 개정	2007. 5.14. 규정 제1327호	제48차 개정	2014.12.05. 규정 제1655호
제6차 개정	2007.12. 6. 규정 제1345호	제49차 개정	2014.12.16. 규정 제1661호
제7차 개정	2008. 2.29. 규정 제1352호	제50차 개정	2015. 1.19. 규정 제1672호
제8차 개정	2008. 6.20. 규정 제1367호	제51차 개정	2015. 2.16. 규정 제1677호
제9차 개정	2008. 8.21. 규정 제1376호	제52차 개정	2015. 3.31. 규정 제1685호
제10차 개정	2008.10. 7. 규정 제1380호	제53차 개정	2015. 4.14. 규정 제1686호
제11차 개정	2009. 2.23. 규정 제1387호	제54차 개정	2015. 6.30. 규정 제1702호
제12차 개정	2009. 7. 1. 규정 제1416호	제55차 개정	2015. 7.23. 규정 제1712호
제13차 개정	2009. 9.14. 규정 제1422호	제56차 개정	2015. 9.11. 규정 제1716호
제14차 개정	2009.12. 7. 규정 제1427호	제57차 개정	2016. 2.19. 규정 제1734호
제15차 개정	2010. 2.26. 규정 제1437호	제58차 개정	2016. 3.25. 규정 제1752호
제16차 개정	2010. 6.14. 규정 제1450호	제59차 개정	2016. 6. 1. 규정 제1759호
제17차 개정	2010. 7.27. 규정 제1454호	제60차 개정	2016. 8.16. 규정 제1766호
제18차 개정	2010.12.29. 규정 제1464호	제61차 개정	2016. 9.12. 규정 제1770호
제19차 개정	2011. 2.22. 규정 제1469호	제62차 개정	2016. 11.1. 규정 제1777호
제20차 개정	2011. 3.15. 규정 제1471호	제63차 개정	2016.11.30. 규정 제1780호
제21차 개정	2011. 5.17. 규정 제1476호	제64차 개정	2017. 2.28. 규정 제1796호
제22차 개정	2011. 5.31. 규정 제1478호	제65차 개정	2017. 6.12. 규정 제1810호
제23차 개정	2011.11.25. 규정 제1492호	제66차 개정	2017.11.20. 규정 제1826호
제24차 개정	2011.12.12. 규정 제1494호	제67차 개정	2018. 2.28. 규정 제1838호
제25차 개정	2011.12.28. 규정 제1497호	제68차 개정	2018. 5.16. 규정 제1851호
제26차 개정	2012. 1.30. 규정 제1506호	제69차 개정	2018. 6.25. 규정 제1856호
제27차 개정	2012. 2.27. 규정 제1509호	제70차 개정	2018. 9.21. 규정 제1866호
제28차 개정	2012. 4.13. 규정 제1517호	제71차 개정	2019. 8. 6. 규정 제1903호
제29차 개정	2012. 6.26. 규정 제1525호	제72차 개정	2019. 9.10. 규정 제1911호
제30차 개정	2012. 7.16. 규정 제1528호	제73차 개정	2020. 2.26. 규정 제1942호
제31차 개정	2012. 8. 8. 규정 제1530호	제74차 개정	2020. 5.14. 규정 제1951호
제32차 개정	2012.11.27. 규정 제1538호	제75차 개정	2020. 9. 8. 규정 제1970호
제33차 개정	2012.12.20. 규정 제1544호	제76차 개정	2020.12. 29. 규정 제1984호
제34차 개정	2012.12.28. 규정 제1548호	제77차 개정	2021. 2. 25. 규정 제1993호
제35차 개정	2013. 2.22. 규정 제1557호	제78차 개정	2021. 4. 30. 규정 제2003호
제36차 개정	2013. 5.24. 규정 제1583호	제79차 개정	2021. 8. 30. 규정 제2016호
제37차 개정	2013. 7.30. 규정 제1588호	제80차 개정	2021.12. 30. 규정 제2037호
제38차 개정	2013. 8.12. 규정 제1590호	제81차 개정	2022. 2. 28. 규정 제2048호
제39차 개정	2013.11.25. 규정 제1602호	제82차 개정	2022. 5. 31. 규정 제2058호
제40차 개정	2013.12.30. 규정 제1611호	제83차 개정	2022. 8. 31. 규정 제2068호
제41차 개정	2014. 1.15. 규정 제1614호	제84차 개정	2022.11. 21. 규정 제2079호
제42차 개정	2014. 2.17. 규정 제1616호	제85차 개정	2023. 2. 23. 규정 제2087호
	2014. 2.28. 규정 제1624호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창의·개발·봉사 정신이 풍부한 인격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며, 각 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 장 조직

제1 절 총장·부총장

제3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2.8.8.)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8.8, 개정 2019. 8. 6.)

제3조의2(부총장·대학원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제목개정 2014.1.15]
(개정 2012.2.27., 2016.6.1., 2020.5.14.)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및 교육혁신본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연구산학부총장은 기획처, 연구처, 정보화본부, 지역협력본부 및 안전관리본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및 특수대학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2.27., 2013.2.22., 2014.1.15., 2015.6.30., 2016.6.1., 2020.5.14., 2020.9.8., 2021.8.30., 2022.2.28., 2022.5.31.)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7., 2014.1.15., 2020.5.14.)

제2 절 교육 조직

제4조(단과대학)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과대학 및 직할학부(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23., 2014.2.17., 2014.3.31., 2021.8.30.)

1. 인문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경상대학
5. 공과대학
6. 농업생명과학대학
7. <삭제> (2018.2.28.)
8. 약학대학
9. 의과대학
10. 생활과학대학
11. 예술대학
12. 수의과대학

13. 사범대학
14. 간호대학
15.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6. 자율전공학부
17. 국가안보융합학부 (개정 2018.2.28.)
18. 국제학부 <신설 2022. 3. 1.>

제4조의2(공유대학) ① 본교에 국내·외 타 대학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공유대학을 둔다.

② 공유대학 내에는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8.]

제5조(일반대학원 등) [제목개정 2016.6.1] 본교에 그 주된 교육 목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2.6., 2009.2.23., 2014.2.17., 2020.12.29.)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가.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09.2.23.)
 - 나. 삭제 <2022 .8. 31.>
 - 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신설 2009.2.23.)
 - 라.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 마. 신약전문대학원 (신설 2010.2.26.)
3. 특수대학원
 - 가. 경영대학원
 - 나. 교육대학원
 - 다. 행정대학원
 - 라. 보건대학원
 - 마. 산업대학원
 - 바. 특허법무대학원
 - 사. 평화안보대학원
 - 아. 국가정책대학원 (신설 2013.2.22.)
 - 자. 스마트농업대학원 (신설 2020.12.29.)

제6조(학부, 학과·전공) ① 대학, 대학원에 별표 2의 학부, 학과·전공을 둔다.

② 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에 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와 학과의 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6.6.1.)

④(삭제 2016.6.1.)

제6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정원,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7.28., 개정 2019.8.6.)

제7조(전임교수 등) ① 전임교수(「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제8조에 따른 교수, 부교

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각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및 전문대학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등에 전임교수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2.8.8., 2019.9.10.)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임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③ 전임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④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7.)

⑤ 전임교수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전임교수 외에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석좌교수,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기금교원, 외래강사, 박사후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9.9.10.)

⑦ 전임교수, 제6항의 각종 교수요원 및 조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1.12.28.)

제7조의2(강사)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단위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른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 3 절 교수회

제8조(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수 및 기금교수(재직기간 2년 이상)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22.5.31.)

②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①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09.2.23.)

② 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원교수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및 신설 2009.2.23.)

1. 교수, 연구 및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발의
3. 학과(부) 및 학부 전공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 전과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2.23.)
7. 기타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2.23.)

③ 필요한 경우 학과(부)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교 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교 교수회를 둔다.

② 전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필요한 경우 전교 교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절 대학평의원회

제11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절 부속시설 등

제12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20., 단서 신설 2009.2.23., 2014.4.11.)

② 부속시설 등에는 각각의 장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장은 관련 대학, 전문대학원, 학과 및 학부의 장으로, 융복합과학원장은 대학원장이, 인제개발원장은 학생처장이, 국제언어교육원장은 국제교류본부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지역협력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총괄지원본부장,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정책연구단장, 도서관장, 창업지원단장,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대학교육혁신본부장,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입시전문위원실장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하며, 부속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09.2.23., 2009.7.1., 2012.2.27., 2013.2.22., 2013.11.25., 2014.8.28., 2015.6.30., 2016.6.1., 2016.11.1., 2017.6.12., 2019.8.6., 2020.2.26., 2020.5.14., 2020.9.8., 2021.4.30. 2021.8.30., 2022.2.28., 2022.5.31., 2022.8.31., **2023.2.23.**)

③ 삭제 <2021.4.30.>

④ 입학본부에 입학과와 입시전문위원실을,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과·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와, 아시아권 국제교류협력센터를,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실·교양교육센터·교수학습지원센터·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기반실과 정보화지원실을, 지역협력본부에 지역협력실과 사회공헌센터를, 융복합과학원에 행정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에 **안전관리실을**, 총괄지원본부에 비서실을,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과와 학술정보운영과를 두며, 과(실) 및 센터별 사무분장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2.23, 개정 2009.7.1., 2010.2.26., 2011.5.31., 2012.2.27., 2013.12.30., 2014.4.11., 2014.8.28., 2014.12.16., 2016.6.1., 2017.11.20., 2020.2.26., 2020.5.14., 2020.9.8., 2021.4.30., 2021.8.30., 2022.2.28., 2022.5.31., 2022.8.31., **2023.2.23.**)

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에 DSC사무과, 대학교육혁신본부,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를 두고, 대학교육혁신본부에 총괄대학운영지원실과 센터를, 각 사업본부에 사업운영 지원실과 사업단을 두며, 사무분장표는 별표 8-2와 같다. (신설 2022.2.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각 과장 및 실장(입시전문위원실장은 제외)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4.8.28., 2020.5.14., 2021.8.30., 2022.2.28., 2022.5.31.)

⑦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교육기본시설 중 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시설 및 공통 부속시설의 운영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4.8.28., 2016.6.1.)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2014.8.28.)

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 별표 4와 같이 학교기업을 두며,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8.28., 2019.9.10.)

⑩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20., 2014.8.28.)

제12조의2(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시설인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 배치기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조선설 2016.6.1.)

제 6 절 행정조직 및 학무회의

제13조(행정조직) ① 총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연구처 및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2020.9.8.)

② 교무처에 교무과, 학사지원과를, 학생처에 학생과를, 기획처에 기획평가과, 대외협력실 및 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를, 연구처에 연구지원과, 연구기획실, 산학협력실 및 산학협력중개센터, 사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며, 각 과(실)등의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08.2.29., 2008.8.21., 2009.2.23., 2011.2.22., 2012.2.27., 2016.6.1., 2020.5.14., 2020.9.8. 2021.8.30., 2022.2.28., 2022.5.31., 2023.2.23.)

③ 대학(원)에 별표 6과 같이 행정실을 두고, 분장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2.23., 2009.9.14.)

④ (삭제 2009.2.23.)

⑤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본부장이 겸보하되, 이의 임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14., 2020.5.14.)

⑥ 제2항에 규정된 각 과장 및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9.2.23., 개정2021.2.25., 2022.5.31.)

⑦ 제12조 및 제13조의 조직 내에 특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과(실)장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31.)

⑧ 제12조, 제13조의 각 과(실)·행정실 등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31.)

⑨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행정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 개정 2009.2.23.)

제14조(학무회의) ①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의를 둔다.

② 학무회의는 총장,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각 대학장(직할학부장 제외), 각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지역협력본부장,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도서관장,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09.2.23., 2009.7.1., 2012.2.27., 2012.6.26., 2013.2.22., 2014.3.31., 2014.8.28., 2015.9.11., 2016.3.25., 2016.6.1., 2016.11.1., 2017.6.12., 2020.2.26. 2020.5.14., 2020.9.8., 2021.4.30. 2021.8.30., 2022.2.28., 2022.8.31.)

③ 학무회의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들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대학원, 학과, 학부, 전공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20.)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칙과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학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무회의의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학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절 위원회

제15조(대외협력추진위원회) ① 본교 발전의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기획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47인 이내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2.2.27., 2012.8.8., 2014.5.26., 2014.8.28., 2020.9.8., 2022.5.31.)

1.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대외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7.)

제15조의2(대학윤리위원회) ① 본교 교직원의 공직윤리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2.27.)

② 대학윤리위원회는 교무처장, 사무국장과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2.27.)

③ 대학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7.)

제16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5조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7.)

②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1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의 10분의 20 이상은 여성 전임교수로 한다.(개정 2012.2.27., 2012.4.13., 2022.8.31.)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7.)

제17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교수회가 대학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3.)

② 대학원위원회는 당해 대학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2.23.)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12.29.)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17조의3(대학원장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간에 협의 또는 조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장위원회는 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제외) 및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9.8.)

③ 대학원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간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학원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3.2.22.)

제17조의4(재정위원회) 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5.6.30.)

제17조의5(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및 도서관장·도서관 분관장(이하 ‘분관장’이라 한다.), 학술정보지원과장과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26. 2020.5.14.)

③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6.6.1.)

제17조의6(연구진흥위원회) ①충남대학교의 중·장기 연구정책수립, 발전 지향적인 연구기획, 연구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한 방안 제시를 위하여 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대학원장·교무처장·기획처장·연구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연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연구 기본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복합과학원 (CIT) 및 대학원의 연구와 관련한 각종 규정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장기 연구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연구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4.30.]

제18조(기타위원회) 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 3 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

제 1 절 학생지원 및 학위과정

제19조(학생지원 등) ① 대학 및 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학위과정)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과정을 두며,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는 일반과정,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둔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1.12.28., 2014.2.17.)

1. 학사학위과정: 각 대학 (개정 2017.2.28.)

2. 석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개정 2014.2.17)

3. 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개정 2022.8.31)

4. 박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개정 2014.2.17., 2022.8.31)

5. 전문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②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및 신약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4.2.17., 2022.8.31)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5.31, 2014.2.17.)

제21조의2(학위과정의 통합) ① 「고등교육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11.27)

제22조(학위종류 및 종별)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 석사, 전문석사, 박사, 전문박사 및 명예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2.23, 2011.12.28)

② 학위종별은 별표 10과 같다.

③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박사학위의 학위종별에 따른다. 다만, 일반대학원에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학문분야의 학위종별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23조(입학절차 및 시기)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학사관리 및 수혜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09.9.14, 개정 2011.3.15)

②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③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2(입학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 입학을 금지한다.

③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다.
(조 신설 2016.11.30.)

제24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3.15)

② 학생은 매 학기에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3절 수업

제2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학기 및 동기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26조(수업일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제27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대학(원)에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이동수업, 집중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8. 5. 16. 2021.8.30.>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2.25.)

③ 제1항의 각 수업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8.30.)

제29조(휴업 및 방학)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하고 학기 및 동기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23.2.23.](#))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절 시험과 성적

제30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교과목 담당 교수(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9.2.23, 2009.7.1)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8.28, 2015.4.14)

③ 교과목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 입대휴학과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창업을 위하여 휴학(이하 “창업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시험개시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14.8.28, 2015.4.14)

제3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업성적은 각 대학원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대학은 D^o급 이상을, 대학원은 C^o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과정은 D^o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9.2.23, 개정 2011.5.17., 2021.12.30., 2022.8.31.)

등 급	백분율점수 (실 점)	평 점	등 급	백분율점수 (실 점)	평 점
A ⁺	95 ~ 100	4.5	C ⁺	75 ~ 79	2.5
A ^o	90 ~ 94	4.0	C ^o	70 ~ 74	2.0
B ⁺	85 ~ 89	3.5	D ⁺	65 ~ 69	1.5
B ^o	80 ~ 84	3.0	D ^o	60 ~ 64	1.0
			F	60점 미만	

③ 성적의 평점평균과 등급,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백분율 점수(실점) 환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 9.14, 개정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삭제 2021.12.30)

제5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 약학과는 6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3., 2011.5.31., 2013.2.22., 2017.2.28., 2021.4.30.)

② 약학대학 약학과에 편입학(이하 “2+4년제”라 한다)한 경우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2.22, 2021.4.30.)

③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④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10.7, 2013.2.22)

⑥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13.2.22)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2)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2. 7., 2009. 2. 23, 2009. 7. 1., 2010. 2. 26., 2011. 5. 31., 2012 .11. 27., 2013. 2. 22., 2014 .2. 17., 2015. 1. 19., 2015.6.30., 2016.2.19., 2017. 2. 28., 2017. 11. 20., 2020. 2. 26. 2021.4.30.)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년

나. 박사학위과정 2년

2. 전문대학원

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3년, 전문박사학위과정 2년

나. 삭제 <2022. 8. 31.>

다. 삭제 <2010. 2. 26.>

라. 삭제 <2010. 2. 26.>

마.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바.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사.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자. 신약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2년
- 차.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단, 교원 특별연수(교육과전)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 나.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다.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라.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마.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바.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사. 스마트농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개정 2022.8.31)
 -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 나. 삭제 <2022.8.31.>

- ②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 ④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항개정 2015.6.30)
-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3, 개정 2011.5.17, 2011.12.28, 항개정 2015.6.30., 2022.8.31.)
-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항개정 2015.6.30)

제34조(장애인 학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절 휴복학, 제적, 자퇴 (개정 2009.7.1)

-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9.7.1, 개정 2014.8.28)
-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2.8.31.)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2.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3. 육아휴학 기간
 4. 창업휴학 기간
 5.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20.5.14.)

- ④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전면개정 2013.7.30., 개정 2016.8.16.)

제3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28.)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개정 2007.12.6., 2009.2.23., 2009.7.1., 2011.3.15., 2011.5.17., 2013.2.22., 2019.8.6., 2019.9.10. 2020.9.8. 2021.2.25.)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 <삭제>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의과대학 의학과외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개정 2022.8.31.)
8.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외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한다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 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11.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13. 사망한 자

제38조(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 7 절 등록금 및 장학

- 제39조(등록금)** ①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 ② 등록금은 정해진 연액을 2개 학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3.15)
- ③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제2항의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또는 그 때마다 따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3.15)
- ④ 유급자는 유급된 학기 또는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2019. 9. 10.)
-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3.15)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15., 2021.4.30.)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반환 기준은 제42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1.4.30.)

③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하며, 2분의 1 경과 후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11.3.15., 2021.4.30.)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한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9.2.23., 2011.3.15., 2021.4.30.)

1.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자
2.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여 휴학한 자
- ⑤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제41조(결석자 등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5)

제4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3.15. 2020.9.8.)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3.15., 2021.4.30.)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42조의2(반환사유 발생일의 결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많은 날짜를 반환사유 발생일로 한다. 휴학 및 복학이 반복되어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2.28.]

제43조(등록금 감면)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학교와의 복수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및 기타 법령에 납입금 감면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15)

② 등록금 감면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제44조(신청 학점 수에 의한 등록금)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시간제 등록생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모집단위별 학기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당해 학기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제45조(장학금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절 정 원 외 학생 및 공개강좌

제46조(정원의 학생) 제1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원의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공개강좌) ① 「고등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대학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재·편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48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2021.4.30.)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3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1.2.22, 개정 2013.2.22., 2021.4.30.)

제49조(재·편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여부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7.1)

②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③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다른 학교에서 제2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3.2.22, 2014.12.16)

④ 정원 외 편입학은 학사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학,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편입학 및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등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7.1, 2011.2.22, 2012.12.20, 2014.12.16)

⑤ 편입학 학년은 제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제1학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편입학 학년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도 할 수 있다.(조신설 2014.12.16)

⑥ 재·편입학생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16)

제50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②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비율은 다음과 같

다.(신설 2014.12.16. 개정 2019. 9. 10.)

지역의 범위	모집 비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이상

③ 입학전형시행계획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16., 2019. 9. 10.)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6.)

제50조의2(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1)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31)

제 2 절 전공(학과)배정 및 전공

제51조(소속전공의 배정) ①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의 학과 또는 전공의 배정은 2개 학기를 이수한 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과 또는 전공의 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과)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2학년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오는 전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전출로 구분한다..(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2017.11.20.)

②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전 학년의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3.5.24)

③ 제2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3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3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4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4년 미만인 학과(전공)에 전입할 수 없다.(신설 2013.5.24., 개정 2017.11.20.)

④ 전출은 해당학년의 학과(전공)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5.24)

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24)

⑥ 편입학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24)

⑦ 대학 또는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단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하며, 제5항의 전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⑧ 전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5.24)

제 3 절 교육과정

제5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학기당 15시간(평가시험시간을 포함)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1학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음악분야의 전공실기 교과목과 수업일수를 단축하였거나 휴업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체, 학교기관 및 학교기업 등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회체험활동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이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영역별 소요학점 및 이수학점) ① 교양 과정의 졸업소요학점 배점기준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44개정 2016.2.16.]

다만,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 및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야간과정)은 36학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5.2.16.)

② 교양과정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의2(기초과정) (삭제 2015.2.16)

제55조(전공과목) 전공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은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의 100분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56조(융복합학과의 전공) ①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6.2.19.)
2. 연계전공 :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개정 2009.7.1)
3. 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4. 산학융복합전공 : 2이상의 학과(부)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신설 2016.2.19.)
5.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17.2.28.)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5.2.16., 2016.2.19.)

③ 제1항 제5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주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2.19.)

④ 제1항 각 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항 변경 2016.2.19.)

제56조의2(마이크로디그리과정)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으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2.25., 개정 2022.2.28.)

제56조의3(융합전공)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내·외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입교원이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28.]

제57조(부전공) (삭제 2016.2.19)

제58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2.2.27)

제5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2.2.27)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7)

제 4 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59조(졸업 및 수료 소요학점) ① 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은 130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대학명	학점	관련 학과(전공)
사범대학	140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142	수학교육과
	150	영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간호대학	140	간호학과
공과대학	166	건축학 전공(5년제)
약학대학	168	약학과(2+4년제)
	232	약학과
의과대학	164	의학과
수의과대학	160	수의학과

(개정 2009.7.1, 2009.9.14, 2011.2.22, 2011.3.15, 2011.5.31, 2011.12.28, 2013.5.24, 2014.2.28, 2017.2.28, 2021.4.30.)

② 의예과 및 수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부전공을 포함한다)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의예과는 2.0)이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관련 교과목,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7.2.28., 2019. 9. 10.)

④ 공학교육심화과정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학생과 3단계산학협력혁신도대학육성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및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7, 2009.9.14, 2012.8.8., 2012.11.27., 2017.6.12., 2022.8.31)

⑤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약학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1. 2.22, 2013.2.22., 2013.5.24. 2017.2.28., 2021.4.30. 2021.8.30., 2022.11.21.)

수료학년 졸업소요 학점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130학점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40학점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142학점	36학점	71학점	107학점	142학점		
147학점	36학점	73학점	110학점	147학점		
150학점	37학점	75학점	112학점	150학점		
160학점	40학점	80학점	120학점	160학점		
164학점	41학점	82학점	123학점	164학점		
166학점	33학점	66학점	99학점	132학점	166학점	
168학점			42학점	84학점	126학점	168학점
232학점	38학점	76학점	118학점	160학점	202학점	232학점
의(수의)예과	36학점	72학점				

⑥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5 절 학점 이수 및 인정

제60조(이수학점의 범위) ① 학생이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②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 이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수학점은 제1항의 학기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점 이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학을 이수한 경우는 8학점 이내
2.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20학점 이내
3.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체험활동을 한 경우는 36학점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2학점 이내
5. (삭제 2012.11.27)
6. (삭제 2017.6.12.)

④ 제3항의 학점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이미 이수한 과목도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이미 이수하거나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 등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61조(학점의 인정) ① 제3절의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정을 이수 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개정 2012.12.28)
3. 입학 후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삭제 2012.12.28)
5. 국내·외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 대학과목을 선이수한 경우. 다만, 학점인정은 이수 후 5년 이내로 입학학년도에 한한다. (개정 2009.7.1)
6.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15.4.14)

② 제1항 중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범위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18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9.7.1, 2012.12.28, 2014.6.25, 2015.4.14)

제62조(재입학자의 학점)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 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편입당시 당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②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에 대한 제2학년까지의 수료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3, 4학년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제3, 4학년에 배정된 교과목 중에서 영역별 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7.12.6, 단서삭제 2009.7.1)

③ 국가고시 또는 자격취득 등을 위하여 학과(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2학년에 배정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이수료 본다.

④ 정원의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점 사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되 학년 판정은 제59조를 따른다.(신설 2012.12.20)

제64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당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9.7.1)

제65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대학원 수강신청 학점은 제외)이 1.75(의예과는 2.0)에 미달

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2019. 9. 10.)

1.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 제1학기 및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재학 중 각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국내·외 대학 교류자 포함)
3.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4. 휴학 중 국외대학 교류자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와 유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0.)

1. 학년 유급: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학생
2. 학기 유급: 당해 학기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F)한 학생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와 유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2.17., 개정 2019.8.6., 2022.5.31.)

1. 학년 유급: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학생
2. 학기 유급: 당해 학기 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F)한 학생
- ③ 약학대학 약학과(통합6년제)의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학생은 학년 유급 대상자가 된다. (신설 2022.5.31.)
- ④ 유급자는 유급된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2009.7.1. 2014.2.17)

제 6 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6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0.7.28., 개정 2017.11.20.)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 10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2.23, 개정 2012.12.20)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6)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학졸업학력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09.2.23, 2015.4.14)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교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한 자(신설 2012.2.27)

② 제1항에서 인정하는 본교의 취득학점에는 본교 정규과정, 시간제등록,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통산한다. <신설 2017.2.28.>

③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2.28.>

④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학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한다. <신설 2017.2.28.>

⑤ 기타 학점은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2.28.>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② 제1항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또는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6.>

[본조신설 2009. 7. 1.]

제71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60조제6항에 따른 이수학점 취소로 인하여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09.7.1.>

제 7 절 시간제 등록생

제72조(시간제 등록생) ① 제48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본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본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2.23)

④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별도반 시간제 등록생 포함)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으로 하며,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2012.2.27)

⑤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현장실습수업 및 주말 등을 통한 집중학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⑥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5.6.30)

제73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점 신청 등) ① 시간제 등록생이 매 학기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23)

②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74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① 시간제 등록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이고, 당해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을 심사에서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의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재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75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2022.8.31)

1.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2.23)
- ③ 대학원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교 해당 대학원의 동일 계열 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15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로 한다. 다만, 수료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09.2.23., 2016.2.19., 2017.11.20.)
- ④ 교육대학원의 공통사회교육전공, 공통과학교육전공은 현직 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1.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세부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쌓아 수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이 우수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6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재 사정한다.

③ 재입학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의2(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 등록하였던 학생은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편입학하는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안에서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8. 31.>

제7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비율은 다음과 같다.(조신설 2014.12.16., 개정 2017.2.28.)

지역의 범위	모집 비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이상

③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2.16)

제 2 절 전공의 변경 및 전과

제78조(전공의 변경) ① 학생의 전공 변경은 석·박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소속 학과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의 전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를 인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교과목은 다른 전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5.14., 2016.6.1)

② 전공의 변경 신청은 첫째학기 이수 후에 할 수 있다.(개정 2007.5.14, 단서삭제 2009.11.14., 개정 2016.6.1.)

③ 전공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의2(전과) ① 석·박사 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전과를 신청하는 자는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을 경유하여 전과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개정 2022.8.31)

②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 주입교수는 전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 가운데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과 시기는 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다만, 계열학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⑤ 기타 전과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 3 절 교육과정

제7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79조의2(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7, 개정 2014.2.17.)

제79조의3(융합전공)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 융합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21.)

제 4 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2.11.27, 2014.2.17., 2016.2.19.)

1. 일반대학원
 - 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 나.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2. 전문대학원
 -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92학점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1.12.28)
 - 나.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신설 2011.12.28)
 - 다. 삭제<2022. 8. 31.>
 - 라. (삭제 2010.2.26)
 - 마. (삭제 2010.2.26)
 - 바.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1.12.28)

- 사.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2009.2.23)
-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2.2.27, 2014.2.17.)
- 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 차.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2.11.27)
- 카.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2010.2.26)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6.12.7, 2009.2.23, 2009. 12.7, 2012.11.27, 2014.2.17.)
- 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2012.11.27)
- 나. 교육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2.11.27, 개정 2013.2.22)
- 다.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2.11.27)
- 라.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2.11.27)
- 마.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3.2.22)
- 바.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4.2.17.)
- 사.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5.1.19.)
- 아. 스마트농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21.4.30.)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개정 2022.8.31)
-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6.2.19.)
- 나. 삭제<2022. 8. 31.>
- ②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C^o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 과정은 교과목별 성적등급이 D^o이상인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서 신설 2009.2.23., 2022.8.31.)
- ③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일반대학원은 별지 제7호, 제7-1호, 제7-2호 서식, 전문대학원은 별지 제12호 서식, 특수대학원은 별지 제18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2.11.21.)
- ④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학점 이수 및 인정

- 제81조(다른 학교의 학점인정)**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학교(본교의 다른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 제82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 제83조(이수학점)** 이수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3조의2(성적경고 및 유급)**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경고 및 유급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5.17)
- ② 삭제<2022. 8. 31.>
- ③ 삭제<2022. 8. 31.>

제6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 제84조(졸업논문)** 대학원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5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별로 정한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별표

10에 의한 해당 학위를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국문학위기와 영문학위기 모두를 수여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2.23, 개정 2014.1.15., 2014.12.5., 2022.11.21.)

구 분	학 위	서 식
일반대학원	석사	별지 제8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국문 서식]
		별지 제9호[영문 서식]
	박사	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0-2호[국문 서식]
		별지 제11호[영문 서식]
전문대학원	석사	별지 제13호[국문 서식(이학석사 등)]
		별지 제14호[국문 서식(의무석사 등)]
		별지 제15호[영문 서식]
	박사	별지 제16호[국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	별지 제17호[영문 서식]
		별지 제19호[국문 서식]
타대학과 공동학위	석사	별지 제20호[영문 서식]
		별지 제22호 또는 제22호의2[국문서식]
		별지 제23호[영문 서식]

-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85조의2(수료자의 등록 등)** 총장의 승인을 받은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7.28)
- 제8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 문화, 사회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 ②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7조(학위수여 취소)**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7)
-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활동 및 지도

- 제88조(교칙준수)**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제89조(공결)** ①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7.1)
- ② 공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 제90조(포상)** ①학 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1조(학생자치기구)** ① 학풍을 새롭게 하고 학생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충남대학교학생회(이하 “학생회” 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학생회의 구성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③ 기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09.7.1)
- 제93조(간행물)** ①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에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당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 ② 제1항 이외의 학생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금지행위)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 행위와 기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5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수업(시험) 또는 연구수행을 방해한 자
 3. 교내·외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
 4. 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건물에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한 자
 6.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② 삭제 <2019. 9. 10.>
-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④ 삭제 <2019. 9. 10.>
-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의2(장애학생지원)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사람(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23.]

제 7 장 자체평가

제96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0.]

제 8 장 학칙개정

제97조(학칙의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제96조에서 이동 <2019. 9. 10.>]

제97조의2(제 규정의 폐기) 총장은 학칙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2.23)

1.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제96조의2에서 이동 <2019. 9. 10.>]

제 9 장 보칙

제98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7조에서 이동 <2019. 9.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9조 제1항 및 제4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학칙 등 폐지) ①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②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및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을 폐지한다.

③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교무규정 및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무규정을 폐지한다.

④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학생정원조정 위원회 규정 및 충남대학교 학점취득특별시험 시행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규정 제3조 4항 및 충남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원 규정 제4조 제4항 중 “신소재연구소”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 특례)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제2조의 폐지 학칙 포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모집단위·학부 및 전공의 폐지와 신설,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모집단위·학부 및 전공의 폐지에 따라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하여 해당 학년에 제적하는 것으로 보며,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연도별 공과대학 모집단위별 전공배정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공 배정한다.

2006.2.28. 당시 제적 학부 및 전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건설계열학과군 (1999~2001학년도)	건축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건축토목환경계열학과군 (2002~2003학년도)	건축학과(5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2006.2.28. 당시 제적 학부 및 전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건축공학과	토목 · 환경공학부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토목 · 환경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토목공학과	토목 · 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기 계 공 학 부 (1996~1998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 · 기계설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 · 선박 · 항공 계열학군 (1999~2003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 · 기계설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선박해양공학과		선박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 · 선박해양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
기계 · 기계설계 · 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 · 기계설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항공우주 · 선박해양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 · 선박해양공학부	선박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재료공학부 (1996~1998학년도)	재료공학과	나노공학부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
화학공학부 (1996~1998학년도)	화학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과		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
	정밀공업화학학과		정밀응용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1999~2005학년도)	응용소재공학전공	나노공학부	나노소재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나노정보시스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
	정밀공업화학전공		정밀응용화학전공
	섬유공학전공		유기소재 · 섬유시스템전공
정보통신 · 컴퓨터공학부 (1997~1998학년도)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		컴퓨터전공
전기계열학과군 (1999학년도)	전기공학과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전파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정보통신공학부 (2000~2001학년도)	전기전자전파전공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파정보통신전공

2006.2.28. 당시 제적 학부 및 전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 및 전공
	컴퓨터전공		컴퓨터전공

②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중 2006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될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06.2.28. 당시 제적 학부 및 전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및전공	모집단위명	학과및전공
공업교육계열 (1999~2003학년도)	건축공학교육과	공 업 교 육 학부	건설공학교육전공
	토목공학교육과		건설공학교육전공
건축 · 토목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계공학교육과		기계 · 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 · 전자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금속공학교육과		기계 · 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공학교육과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전공
기계 · 금속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전자공학교육과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전공
	화학공학교육과		화공 · 섬유공학교육전공
기술 · 화공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술교육과		기술교육전공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시설과 각종 위원회는 이 학칙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학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283호, 2006.5.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92호, 2006.6.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11호, 200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별표2, 제19조의 별표9, 제22조 제2항 별표10의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33조 및 제80조의 산업대학원 무논문 학위신청자에 대한 수업연한과 수료학점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의예과는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의학과로 진급할 때까지 의예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대학원의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에 재직하는 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이학석사, 이학박사를, 제약학과에 재직하는 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약학석사, 약학박사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에 재직하는 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학부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명칭이 변경된 전공 소속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전공의 해당 학년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2007.2.28. 당시 제적 학부(전공)		2007.3.1. 이후 변경 학부(전공)	
공과대학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공과대학	바이오응용화학부 화학공학전공
	바이오응용화학부 고분자바이오재료전공		바이오응용화학부 고분자공학전공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작물생산과학전공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작물과학전공

②이 학칙 시행당시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1학년을 수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과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공배정 원칙에 따라 각각 변경된 전공으로 배정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327호, 2007.5.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기획정보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과”를, “기획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345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제2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2조 별표 1, 제5조, 제6조 제1항 별표 2, 제13조 제3항 별표 6, 제19조 별표 9 및 제22조 별표 10의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53조, 제54조의 2 및 제63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대학원 바이오산업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되는 보건대학원 바이오산업과학과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바이오산업과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보건대학원 바이오산업과학과에 재적하는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학원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공업교육학과에 재적하는 자는 공업기술교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2008년 3월 1일부터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제명을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제1조의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을 보건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352호, 2008.2.29)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67호, 2008.6.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76호, 2008.8.21)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회조사센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0호, 2008.10.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7호, 2009.2.23, 규정 제1538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의 영문학위증 수여는 200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0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제32조 제1항의 약학대학 입학자의 수업연한, 제59조 제3항의 미래설계상단제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제80조의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수료학점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제14호 및 제15호의 간호대학 및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설립 및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자율화추진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 및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의 수업연한은 제32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다만, 재입학 학생 중 2009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②2010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약학부에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편입학 하는 학생의 편입학 학년은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법과대학 · 의과대학 및 소속 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과대학은 2018년 2월까지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며, 의과대학은 2008학년도 입학자의 편제가 완성되는 2012년 2월까지 대학 조직을 유지한다.(개정 2012.7.16)

②법과대학 법학부 및 의과대학 의학과는 2012년 3월 1일 이후에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법과대학 법학부 및 의과대학 의학과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3월 1일 이후 재적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경우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육과정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 및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해당 대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가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수를 각각 겸무한다.

제4조(사범대학 · 간호대학 ·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교육과 및 공과대학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전공, 기계 · 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전공, 화공 · 섬유공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는 대학 및 학과(전공)의 명칭을 각각 사범대학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 · 금속공학교육과,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및 기술교육과로 변경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교육과 및 공과대학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전공, 기계 · 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전공, 화공 · 섬유공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의과대학 간호학과, 생명과학부에 소속된 학생(사범계학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전임교수 등은 각각 사범대학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 · 금속공학교육과,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에,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교육과 및 공과대학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전공, 기계 · 금속공학교육전공, 전기 · 전자 · 통신공학교육전공, 화공 · 섬유공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소속변경 또는 졸업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재적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학사지도를 위하여 사범대학 소속 전임교수가 겸무한다.

제5조(대학의 모집단위 변경, 학과 · 전공 명칭변경 및 전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당시의 모집단위 ·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 · 전공에 재적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위 ·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를 계열 또는 학부로 하여 이미 입학하였으나 전공 배정을 받지 못한 자 및 이미 전공을 배정 받았지만 학사조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전공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전공 배정 원칙에 따라 전공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업연한은 이 개정 학칙에 불구 하고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6조(대학원 학과·전공의 통·폐합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당시의 학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전공에 재적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2009학년도부터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의 농업교육전공(동물자원)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고, 학위수여는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16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전과는 2011학년도 전과부터, 제70조의2의 졸업연기제도는 2009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부터, 제33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에 2009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422호, 2009.9.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와 관련하여 이 학칙 시행당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기별 성적평점평균과 등급은 다시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과 등급의 산출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27호, 2009.12.7)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37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 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전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연과학대학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나노공학부, 전기정보통신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소속 학생으로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의 전공배정 원칙에 따라 전공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중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9.2.28. 당시 재적 학부(학과) 및 전공		2010.3.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및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수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전공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천문우주과학부	물리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전공	천문우주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화학과	화학과

2009.2.28. 당시 재적 학부(학과) 및 전공		2010.3.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및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지구환경과학부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전공	지질환경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전공	해양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선박해양공학전공	선박해양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나노공학부	재료공학전공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나노소재공학전공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전기정보통신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전자정보통신전공	전파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식물자원학부	작물과학전공	응용식물학과	응용식물학과
	원예학전공	원예학과	원예학과
환경임산자원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산림환경자원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임산공학전공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낙농산업과학전공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도목전공	지역환경도목학과	지역환경도목학과
	생물산업기계전공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학전공	응용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전공	생물환경화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전공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전공	미생물분자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물학과

제3조(대학원 학과의 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0년 2월 28일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대학원 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10년 3월 1일부터 전공 명칭이 변경 되는 스포츠과학과 건강관리 및 스포츠산업 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스포츠건강전공과 스포츠문화·산업전공에 각 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2010학년도부터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의 정보·컴퓨터교육전공은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고, 학위수여는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4조(졸업요건에 따른 수여 학위증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85조제1항 별지 제19호의2 서식은 평화안보대학원에 대하여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454호, 2010.7.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69호,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별표2, 제19조제1항 별표9 및 제22조제2항 별표10의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별표3, 제13조제2항 및 별표5 개정 학칙은 충남대학교 인제개발원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대학 모집단위 변경, 학과 폐지 및 학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1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경영학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2.28. 당시 제적 학과		2011.3.1. 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위명	학과명	모집단위명	학부명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부	경영학부
회계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제3조(약학대학 모집단위 변경, 학부(전공) 폐지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으로서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의 전공배정원칙에 따라 전공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2008학년도 이전 신입학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재입학한 학생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소속을 변경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2.28. 당시 제적 학부 및 전공		2011.3.1.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약학부	약학전공	약학과	약학과
	제약학전공	제약학과	제약학과

③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재입학자의 학년 판정은 개정 전 학칙에 따른다.

④(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신입학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재입학자에게는 종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대학원 학과·전공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학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2011.2.28. 당시 제적 학과 및 전공	2011.3.1. 이후 변경(신설) 학과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과 - 수질관리 및 상하수도공학전공 - 대기,폐기물,에너지공학전공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 제어전공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 제어 및 항법전공
박사학위과정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 제어전공	- 제어 및 항법전공
학과간협동과정	○ 기록보존학과	○ 기록학과
평화안보대학원	○ 평화안보학과 - 평화안보학 전공 - 국가전략 전공 - 국제지역학 전공	○ 국제학과 - 국제지역 및 교류협력 전공 -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전공 - 영어 및 국제문화 전공

부 칙(규정 제1471호, 2011.3.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행정대학원,보건대학원,산업대학원,특허법무대학원,평화안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중 “납입금”이라는 용어를 모두 “등록금”으로 한다. (개정 2014.2.17)

제3조(경과조치)①제59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1476호, 2011.5.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78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부터 전공이 폐지되는 독일어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 식물자원·조경교육전공, 농공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공통사회교육전공, 공통과학교육전공은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전공에 재적하는 자의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고, 학위수여는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92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4호, 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7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1항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는 2012학년도 입학자(신입학, 2014학년도 편입학, 재입학은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의 졸업소요학점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다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입학자는 개정 학칙의 졸업 소요학점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의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및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의 졸업 및 수료학점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4조(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대학원 무용학과 입학자의 석사학위 종별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5조(대학원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일반대학원 일반과정의 법학과 석사과정, 중어중문학과(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석사과정,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박사과정, 무역학과(국제경영전공)의 석사과정과 학과간협동과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은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전공)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11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2012학년도 이후 신설(변경)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2011학년도 이전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과간협동과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 특허법무전공의 교육과정은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의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규정 제1506호, 2012.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09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 제12조 제1항 별표3의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는 동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충남대학교 비서홍보실 규정, 충남대학교 정책기획단 규정 및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517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2012. 3. 1자 개정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경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과”를, “경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과장”을, “시설환경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과”를, “시설환경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과장”을, “연구지원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지원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산학연구본부장”을, “입학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본부”를, “입학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본부장”을, “입학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과”를, “입학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25호, 2012.6.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28호, 2012.7.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30호, 2012.8.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38호, 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0조제1항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44호, 2012.12.20)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변경되는 학년도부터 적용하며, 평화안보대학원 전공변경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평화안보대학원 전공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제학과의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전공’과 ‘영어 및 국제문화전공’은 ‘국제통상 및 문화전공’으로, 군사학과의 ‘국방정책전공’은 ‘군사학전공’으로 2013학년도 이후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48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제2항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인정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의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의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57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년 조정에 따른 적용례) 약학대학 학년 조정을 위한 제32조제2항·제48조제2항·제59조제5항의 개정 학칙에 따라 약학대학 2011학년도 입학자는 5학년으로, 2012학년도 입학자는 4학년으로 각각 학년을 조정한다.

제3조(모집단위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자유전공학부 과학기술전공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학위종별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행정전공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 및 학위종별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전공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학원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위 수여 시 학위종별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학위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무논문학위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교육대학원의 2012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예정자까지는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②평화안보대학원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83호,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범대학 영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의 졸업이수학점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표에서 “130학점~140학점”을 “130학점~142학점”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588호, 2013.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90호, 2013.8.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02호, 2013.1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1호, 2013.12.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4호, 2014.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6호, 2014.2.17,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을 인용한 경우에는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기관명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명칭 변경전의 소속 제적생은 개정된 학칙으로 적용한다.

제4조(수의과대학 유급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수의과대학의 유급제는 2014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학년 진급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학(원)의 모집단위 변경,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4 학년도 이전 입학생중

[제목개정 2014.6.25]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4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디자인창의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 할 수 있다.

2014.02.28. 당시 제적 학과 및 전공		2014.03.01. 이후 변경 학과 및 전공	
모집단위명 (학과명)	전공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전공명
산업미술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창의학과 (시각·제품디자인전공)	시각·제품디자인전공
산업미술학과 (공예전공)	공예전공	디자인창의학과 (도자·섬유디자인전공)	도자·섬유디자인전공

②일반대학원 천문우주과학과 및 지질학과와 석·박사과정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6.25)

③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4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우주·지질학과와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4.6.25)

2014.2.28. 당시 제적 학과(전공)	2014.3.1. 이후 변경(신설) 학과(전공)
모집단위 학과명	모집단위 학과(전공)명
천문우주과학과	우주·지질학과
지질학과	

부 칙(규정 제1624호, 2014.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27호, 2014.3.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1호, 2014.4.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3호, 2014.5.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9호,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소속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5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015년 2월 졸업자에 대한 학위명은 소속변경을 한 학생에 대하여 변경된 학위명으로 수여한다.

부 칙(규정 제1643호, 2014.8.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중 학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와 제35조 제3항에 의한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을 위하여 휴학 중이거나 육아휴학, 창업휴학,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정보 등으로 인하여 2015년 2월말 현재 휴학 중인 자는 2016학년도 제1학기까지 복학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

②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중 학칙 제35조 제3항에 의한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자 및 병역복무를 위하여 2015년 2월말 이전에 휴학 중인 자는 2017학년도 제2학기까지 복학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

부 칙(규정 제1655호, 2014.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61호, 2014.12.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2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 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677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과학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약대학 모집단위 변경, 학과 폐지 및 학과(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5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5. 2. 28. 당시 제적 학과		2015. 3. 1.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위명	학과명	모집단위명	학과(부)명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전파공학과	전파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정밀응용화학학과	정밀응용화학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3조(연계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기초의과학, 미국지역학, 교육공학, 식물프론티어바이오, 유럽지역학, 환경조경학연계진공은 진공에 재적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학위수여는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4조(대학원 등의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2015. 2. 28. 당시 제적 학과	2015. 3. 1.이후 변경(신설) 학과
석사학위과정	○화학·생화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학위과정	○화학·생화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제5조(교육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의 프랑스어교육전공, 도덕·윤리전공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위수여는 개정 전 학칙에 의한다.

제6조(전공과정 개편에 따른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① 전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기초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4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685호, 2015.3.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86호, 2015.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02호, 2015.6.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2호, 2015.7.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6호, 2015.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4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75조 제3항 및 제80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개정 학칙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과대학 모집단위 변경, 학과 폐지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회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6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6. 2. 29. 당시 재적 학과		2016. 3. 1.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위명	학과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고분자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소재·섬유소재공학부	유기소재·섬유소재공학부		

제3조(대학원 등의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회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2016. 2. 29. 당시 재적 학과	2016. 3. 1.이후 변경(신설) 학과
석사 학위과정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박사 학위과정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부 칙(규정 제1752호, 2016.3.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59호, 2016.6.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66호, 2016.8.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0호, 2016.9.12.)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7호, 2016.1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80호, 2016.11.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96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의과대학 의학과로 진급하는 학생 및 의과대학 의학과로 편입한 학생부터 적용하고, 제56조제1항과 제59조제3항은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조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2017년 3월 1일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되, 의과대학 의학과 교육과정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2016학년도 이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수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각각 겸무한다.

부 칙(규정 제1810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충남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의 제명을 “충남대학교 백마사회공헌센터 운영규정”으로 한다.
- ② 제1조 및 제4조 중 “사회봉사센터”를 “백마사회공헌센터”로 한다.

부 칙(규정 제1826호, 2017.11.20.)

부 칙(규정 제183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과대학 법학부는 2018년 3월 1일 이후에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법과대학 법학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3월 1일 이후 재적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해당 대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가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수를 겸무한다.

③ 2018년 3월 1일 이후 법과대학 법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재적 중인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법과대학장 명의로 별표 10에서 정한 법학사 학위(별지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이 경우 법과대학 법학부의 학사운영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행한다.

④ 이 학칙 시행일부터 법과대학 법학부로 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과대학 법학부를 제외한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851호,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교육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공 및 교육컨설팅전공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또는 학과·전공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재적생 및 전임교원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약소재 전공은 변경 전인 약품화학 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보며, 소비자학과는 학생이 변경된 소속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2018학년도 이후에 변경된 소속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6.25.>

2018. 2. 28. 당시 재적 학과·전공			2018.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명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명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군사학부	육군학전공	육군학전공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국토안보학전공
	해군학전공 (계약학과)	해군학전공 (계약학과)		해양안보학전공 (계약학과)	해양안보학전공 (계약학과)
일반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농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약학대학	약품화학	약학대학	약학대학	신약소재
산업대학원	<삭 제> 2018. 6. 25.		산업대학원	<삭 제> 2018. 6. 25.	
	전기전파공학과	전기전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제3조(사범대학 모집단위·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8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직 교육과정을 따른다.

2018. 2. 28. 당시 재적 학과·전공			2018.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명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명
사범대학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사범대학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이후 전공 명칭이 변경된 기계·재료교육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인 기계·금속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5조(대학원 기계공학과 전공 폐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이후 전공이 폐지·신설된 경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아래와 같이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대학원	구 분	2018. 2. 28. 당시 재적 학과·전공		2018.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모집단위명	학과·전공	모집단위명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계공학과	구조 및 제어시스템	기계공학과	고체설계 및 제어
	박사과정		융합시스템설계		열유체
			열유체시스템		
			첨단생산시스템		

제6조(산업대학원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1일 이후 학과명이 변경된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와 의 경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2018학년도 이후에 변경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856호, 2018.6.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66호, 2018.9.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3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또는 학과·전공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전임교원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9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9. 2. 28. 당시 재적 학과(부)·전공			2019. 3. 1.이후 변경 학과(부)·전공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명	대학(원)	모집단위명	학과(부)명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컴퓨터융합학부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일반대학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전공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소비자학전공

제3조(수의과대학 유급·제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졸업연기제도에 대한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졸업연기제도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로 본다.

부 칙(규정 제1911호, 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 3회 성적경고 자 제적 조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37조제10호 및 제11호의 신설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자(제적생 중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과대학 의예과 수료 및 성적경고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942호, 2020. 2.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0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의 경우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제2항과 같이 변경된 대학원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0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 2. 29. 당시 제적 학과·전공			2020.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일반대학원	우주·지질학과	우주지질전공	일반대학원	우주·지질학과	지질환경과학전공
					천문우주과학전공
일반대학원	대기과학과	대기과학전공	일반대학원	우주·지질학과	대기과학전공
일반대학원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전공	일반대학원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유기응용재료공학전공

③ 전자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화학생물공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와 신설시기는 2020년 9월 1일로 한다.

④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와 응용화학공학과 화학바이오융합소재 전공은 전자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화학생물공학과가 개설되는 2020년 9월 1일 폐지하며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2020학년도 3월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되는 학과(전공)에 재적하고 있거나 수료한 자중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0학년도 9월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0. 8. 31. 당시 제적 학과·전공			2020. 9.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일반대학원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마이크로파 및 광파	일반대학원	전자공학과	마이크로파 및 광파
		반도체 및 회로			반도체 및 회로
		제어 및 항법			제어 및 항법
		통신 및 신호처리			통신 및 신호처리
		전파공학			전파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일반대학원	응용화학공학과	컴퓨터시스템	일반대학원	화학생물공학과	컴퓨터시스템
		화학바이오융합소재			화학바이오융합소재

제3조(산업대학원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부터 학과가 폐지되는 산업대학원의 공공디자인정책학과, 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원자력에너지학과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공공디자인정책학과·산업공학과·신소재공학과는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기계공학과·원자력에너지학과는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수서정리과, 자료운영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951호,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대의협력부총장, 정보통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연구산학부총장, 정보화본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지원실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지원실 업무는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때 까지 일반대학원에서 수행한다

부 칙(규정 제 1970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과대학 유급·제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입학자 및 2021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편입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산학연구본부, 산학연구본부장, 백막사회공헌센터, 백막사회공헌센터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연구처, 연구처장, 사회공헌센터, 사회공헌센터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984호, 2020.12.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별표6 「대학(원)의 행정실」, 별표7 「대학(원)의 분장사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1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의 경우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제2항과 같이 변경된 대학원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1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 2. 28. 당시 제적 학과·전공			2021.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기초심리학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
		응용심리학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통신및보안전공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네트워크및보안전공
		데이터및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컴퓨터시스템및멀티미디어전공			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전공

③ 여성전파학과, 바이오AI융합학과의 개설시기는 2021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993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개정학칙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이 시행한 날(2021.4.21.)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0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바이오AI융합학과 2021학년도 재적생의 학위종별은 개정된 학위종별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16호, 2021.8.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대학·사범대학·국제학부 행정실 개설시기는 2022년 3월 1일로 한다.

제2조(국제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년 3월 1일 당시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에 소속된 학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교원 등은 국제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속이 변경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2022학년도 이후의 국제학부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22년 3월 1일 당시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이 국제학부로 소속변경 또는 졸업할 때까지 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재적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학사지도를 위하여 국제학부 소속 전임교수가 겸무한다.

제3조(교육대학원 신설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교육대학원 수학교수학습전공 및 창의융합영재교육전공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계·재료교육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 및 학위종별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되,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개정된 전공을 적용한다.

제4조(학위증 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변경된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은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37호, 2021.12.30)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48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과학대학 모집단위 변경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2학년도 이후에 신설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5. 2. 28. 당시 재적 학과		2022. 3. 1.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도시·자치융합학과	도시·자치융합학과

제3조(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의 경우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제2항과 같이 변경된 대학원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2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2. 2. 28. 당시 재적 학과·전공			2022.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환경·설비
		건축구조			건축구조·재료·시공

제4조(나노학위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예정자까지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공포한 날 이후부터 발급하는 학위증에는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58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유급 기준의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유급 기준은 2023학년도 약학대학 약학과(통합6년제)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68호, 2022.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교육대학원 영어교수학습전공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79호, 2022.11.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통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3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 학과·전공의 폐지 및 신설, 통합, 명칭변경의 경우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제2항과 같이 변경된 대학원 학과·전공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2022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3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3. 2. 28. 당시 재적 학과·전공			2023. 3. 1.이후 변경 학과·전공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통계학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데이터사이언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생산관리·MIS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운영관리·MIS
일반대학원	전과정보통신공학과	전과공학전공	일반대학원	전과정보통신공학과	전과공학전공
		컴퓨터네트워크전공			정보통신시스템전공
		정보통신시스템전공			컴퓨터시스템전공
일반대학원	선박해양공학 과	선박해양구조전공	일반대학원	자율운항시스 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 템공학 전공
		선박해양유체전공			
일반대학원	자율운항시스 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 전공	일반대학원	자율운항시스 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 템공학 전공
		자율운항시스템공학 전공			

③ 선박해양공학과는 폐지되는 학과(전공)에 재적하고 있거나 수료한 학생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2022학년도 이전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선박해양공학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2023년 3월 1일 이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할 수 있다. 단, 학·석사 연계 학사과정에 취득한 대학원과목은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와의 주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지식재산융합학과, 기술실용화융합학과의 개설시기는 2023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규정 제2087호, 2023.2.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과대학 모집단위 변경,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통합학과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통합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범대학 모집단위·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3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직 교육과정을 따른다.

2023. 2. 28. 당시 재적 학과		2023. 3. 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위명	학과명	모집단위명	학과명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별표 1](개정 2007.12.6, 2009.2.23, 2009.12.7, 2010.2.26, 2013.2.22., 2014.2.17. 2020.12.29.)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제2조 관련)

대학원명	교 육 목 표
대학원	대학 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법학전문 대학원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의학전문 대학원	1. 실력 가. 일차 진료를 위한 기본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나. 자기 개발에 충실하여 전문성을 배양한다. 2. 봉사 가.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을 선도한다. 나. 의학을 통한 생명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3. 신뢰 가. 올바른 윤리관과 생명관을 가진다. 나.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다.
분석과학 기술대학원	분석과학 기술 분야의 실천적 이론 적용과 연구 개발을 통하여 분석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에너지과학 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를 선도할 다학제적 융합지식과 실천적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신약전문 대학원	신약과학 기술 분야의 이론 및 연구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경영대학원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지니는 미래 글로벌 경영리더의 양성, 정직과 윤리를 바탕으로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시하는 미래 윤리 경영리더의 양성, 인적자본, 고객자본, 조직자본 등의 지적자본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미래 지식 경영 리더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교육대학원	교육이념을 지향하는 심오한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그 응용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자적인 인격과 자질을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행정대학원	학문의 이론과 현실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관리자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대학원명	교 육 목 표
보건대학원	보건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보건인력과 차세대 산업인 바이오 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한 연구 및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산업대학원	산업 기술의 이론과 실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인을 양성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허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과 법 전반의 심화된 이론과 실재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특허법무 및 일반법무 관리자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고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와 법치사회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와 안보의 이론과 실재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평화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의 이론과 실재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 및 재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농업대학원	스마트 영농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기술의 이론과 실재를 심오하게 연구, 교육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유능한 스마트농업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별표 2]<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09.12.7, 2010.2.26, 2011.2.22, 2011.5.31, 2011.12.28, 2012.12.20, 2013.2.22, 2014.2.17, 2014.6.25, 2015.2.16, 2016.2.19, 2017.2.28, 2018.2.28, 2018.5.16, 2019. 8. 6, 2020. 2. 26, 2020.12.29, 2021.8.30., 2022.2.28., 2022.8.31., 2022.11.21., [2023.2.23.](#)>

대학·대학원의 학부·학과·전공 설치현황(제6조제1항 관련)

1. 대학

대학명	학과(전공)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12개 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부, 도시·자치융합학과	
	1개 학부, 7개 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학과, 화학과, 생화학,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10개 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1개 학부, 3개 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2개 학부, 16개 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1개 학부, 10개 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1개 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2개 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3개 학과	
예술대학	음악과(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과(관악전공, 현악전공), 회화과(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과, 디자인창의학과(도자·섬유디자인전공, 시각·제품디자인전공)	
	5개 학과(9개 전공)	

대학명	학과(전공)	비고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2개 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10개 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1개 학과	
생명시스템 과학대학	생물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3개 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공공안전학전공)	
	1개 학부(3개 전공)	
국가안보 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계약학과)	
	1개 학부(1개 전공)	
국제학부 <신설 2022.3.1>	국제학부(국제학전공, 한국문화학전공)	
	1개 학부(2개 전공)	
합계	95개 [6개 학부, 85개 학과, 4개 전공]	

※ 산출 기준

- 단과대학 수: 17개(자유전공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 국제학부 포함)
- 학과 수: 95개
 - 학과: 85개
 - 학부: 6개(행정학부, 경영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융합학부, 동물자원과학부, 국제학부)
 - 전공: 4개(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공공안전학전공, 국토안보학전공)
- 계약학과(국가안보융합학부 해양안보학전공) 및 예술대학 세부전공 9개, 국제학부 세부전공 2개는 전공 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일반과정

식 사 학 위 과 정		박 사 학 위 과 정	
계 열	학 과	계 열	학 과
인문 · 사 회 계 열 (27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국가안보융합학과	인문 · 사 회 계 열 (30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국가안보융합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우주·지질학과, 소비자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농화학과, 농업기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우주·지질학과, 소비자학과
공 학 계 열 (20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공 학 계 열 (20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예·체능 계열 (7개 학과)		예·체능 계열 (4개 학과)
의 학 계 열 (4개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디자인창의학과	의 학 계 열 (4개 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디자인창의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수의과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수의과학과
5 계 열	82개 학과	5 계 열	82개 학과

○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의공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의생명융합학과,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융합기계시뮬레이션, 안전과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여성젠더학과, 바이오AI융합학과, 리더십융복합학과	의공학과, 보건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군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국제지역학과, 국가정책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바이오AI융합학과,
15개 과정	13개 과정

○ 학연산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연구소(원)	연구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G R&D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촌진흥청, (주)KT산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G R&D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촌진흥청, (주)KT산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4개 연구소	24개 연구소

■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학과[전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기초과학전공, 응용과학전공]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학과[신에너지소재전공, 신에너지공정전공]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신약개발학전공]

■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학과[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및 정책전공,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프랑스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일본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간호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기계공학교육전공, 화공·섬유교육전공, 건설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학제2015.3.1.] [변경2022.3.1.] 한문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교육전공,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공, 교육컨설팅전공, [신설 2017.3.1.] 수학교육전공, 창의융합영재교육전공, 영어교수학습전공] <신설 2022.3.1.>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자치행정학전공, 통일·북한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식품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외식산업학과
특허법무대학원	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전공],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전공]
평화안보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 및 교류협력전공, 국제통상 및 문화전공]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군수·획득관리전공, 군상담심리전공] 과학수사학과 [범죄수사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재난정책학과[재난정책 전공]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도시·환경정책전공, 과학기술정책전공, 농식품정책전공, 경제통상정책전공, 사회문화정책전공]
스마트농업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과[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전공]

[별표 3]<개정 2006.6.28, 2006.12.7, 2007.5.14, 2007.12.6, 2008.6.20, 2008.8.21, 2009.2.23, 2009.12.7, 2010.2.26, 2011.2.22, 2011.11.25, 2011.12.12, 2012.1.30., 2012.2.27, 2012.6.26, 2012.12.28, 2013.2.22, 2013.11.25, 2014.4.11, 2014.8.28, 2015.2.16, 2015.6.30, 2015.7.23., 2015.9.11., 2016.6.1., 2016.8.16., 2016.11.1., 2017.6.12., 2017.11.20., 2018.2.28, 2018.9.21., 2019.8.6., 2019.9.10., 2020.2.26, 2020.5.14, 2020.9.8., 2021.4.30, 2021.8.30, 2022.2.28, 2022.5.31., 2022.8.31., [2023.2.23.](#)>

부속시설 등(제12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구분	소속 등	시설명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공통	도서관, 학생회관, 정보화본부
지원시설	총장직속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교육혁신본부, 지역협력본부, 안전관리본부, 총괄지원본부, 인재개발원,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정책연구단, 창업지원단, <삭제>, 융복합과학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공통	학생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신문방송사, 보건진료소, 체육진흥원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평생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산학협력단,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자학원, 공동동물실험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인권센터, 체육영재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 학생상담센터, 법률센터
	인문대학	통역번역원, 한국어교육원, 언어치료센터
	사회과학대학	심리성장과 자기조절센터
	자연과학대학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공과대학	공학교육실습관, 공학교육혁신센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학술림, 동물자원연구센터
	약학대학	약초원
	생활과학대학	여성인력종합교육센터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사범대학	교직부,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 교육연수원

[별표 4] <개정 2019. 9. 10.>

학 교 기 업(제12조제8항 관련)

기업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소 제 지	비고

[별표 5]<개정 2007.5.14, 2007.12.6, 2008.2.29, 2008.8.21, 2009.2.23, 2009.12.7, 2010.2.26, 2011.2.22, 2011.3.15, 2012.2.27, 2012.12.28, 2013.2.22, 2014.8.28, 2015.4.14, 2015.6.30, 2015.7.23, 2016.6.1., 2016.8.16., 2016.11.1., 2017.2.28, 2017.6.12, 2017.11.20, 2018.2.28, 2018.5.16., 2020.5.14, 2020.9.8, 2021.2.25, 2021.4.30, 2021.8.30., 2022.2.28, 2022.5.31., [2023.2.23.](#)>

행정조직의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교무처	교무과	1. 관인관수(처 직인에 한함) 2.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학칙 및 교무 관련 제 규정 제정, 개·폐 4. 전임교수, 비전임 교수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조교의 인사 및 복무관리 6. 정년퇴임식(교원) 7. 학생의 정원 관리 8. <삭제> 9. 학사계획 수립 10.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전반적 사항 11. 공개강좌 개설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체육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관리 지도 13. 처 소관 회계 관리 14. <삭제> 15. <삭제> 16.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사지원과	1. 관인관수(민원업무용에 한함) 2. 입학·등록·전공배정·휴학·복학·재입학·전학·전과·퇴학·제적·졸업 3. 학적조회 및 학적부 관리 4. 학위수여 및 교원자격증 발급 5. 학사서비스센터 운영(학력증명서 등 발급 관련) 6. 수강신청, 가상강좌 운영 등 수업관리 7. 성적관리(졸업논문 포함) 8. 강사료 단가책정 및 지급확정 9. 계절학기 운영 10. 강의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1.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학생처	학생과	1. 관인관수(처 직인에 한함) 2.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3. 학생 병사관리 4. 학생증 발급 5. 학생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학생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천극장의 관리 7. 학생생활관, 보건진료소, 체육진흥원, 신문방송사,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관리 지도 8.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 관리 9.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처 소관 회계 관리 11.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처	기획평가과	1. 관인관수(처 직인에 한함) 2. 대학발전 및 재정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대학의 하부조직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연구시설 제외) 4.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8. 예산편성위원회, 평가기획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9. <삭제> 10. 도서관 관리 지도 11. 기타 대학발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12. 처 소관 회계 관리 13.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외협력실	1. 대학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모집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운영 4. 대외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 5. 대학 홍보정책 수립 등 홍보 관리 6. 언론 보도 및 인터뷰 등 언론 관리 7. 협약식 행사계획 수립 등 행사관리 8. 법률센터 관리 지도 9. 기타 발전기금, 외부장학금,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IR센터	1. 대학정보공시 운영 총괄 2. 고등교육통계조사 3. 성과자료 검증위원회 운영 4. 통계연보 작성 및 발간 5. 교육수요자 조사의 관리 및 운영 6. 대학 성과관리 기획 7. 성과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8. 대학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환류 9. 대학 성과분석 및 지원
	<삭제>	<삭제>
연구처	연구지원과	1. 연구처 총무·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처 소관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감사에 관한 사항 5. 전산시스템 관리 감독 6. 기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및 연구관리부 관리 지도 및 업무지원 8. 공동동물실험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관리 지도 9. 기타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기획실	1. 연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 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연구진흥 지원 4. R&D/학술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대형과제 수주 기획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부 관리 지도 및 업무지원 7. 기타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실	1. 산학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2. 지식재산권 관리 3. 교수·학생 창업에 관한 업무지원 4. 계약학과 관리 및 산학협약 지원 5. 산학협력 수익화 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6.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 관리 7.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관리 지도 및 업무지원 8. 공동실험실습관, 학교기업 관리 지도
	산학협력 중개센터	1. 원스톱포털케어시스템 운영 2. 산학연관협력발전위원회 운영 3. 학내 산학협력 유관기관의 사업 연계 업무 4.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사무국	총무과	1. 관인관수 2.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규정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당직·소방·차량 및 주차 관리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9. 비상계획·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10. 입학식·학위수여식·정년퇴임식·기타행사 및 회의 11. 연금·의료보험 등 직원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12.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임해수련원의 관리 13. 총괄지원본부 지원 14. 대학윤리위원회 운영 15. 기록관 운영에 관한 업무 16. 학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과	1. 관인관수(회계직공무원 직인에 한함)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등록금 결정·수납에 관한 사항 4. 세입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8.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9. 물품 수급계획 수립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12. 재정위원회 운영 13. 사무국 소관 회계 관리
	시설과	1.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설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의 등 시설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설·설비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시설·설비공사용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 및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7. 캠퍼스 조경관리 업무 8.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안전관리(건물구조, 외곽시설물, 가스, 전기, 급·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별표 6](개정 2007.12.6, 2008.2.29, 2009.2.23, 2010.2.26, 2010.3.22, 2012.2.27, 2013.2.22., 2014.2.17., 2017.2.28. 2018.2.28. 2020.9.8., 2020.12.29., 2021.4.30. 2021.8.30., 2022.8.31)

대학(원)의 행정실(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명칭	분 장 사 무
인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생명시스템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인문대학·생명시스템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및 부속시설 업무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경상대학 행정실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경상대학·경영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국가안보융합학부 행정실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국가안보융합학부·평화안보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	일반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신약전문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공과대학	공과대학 행정실	공과대학·산업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농업생명과학대학·스마트농업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예술대학 사범대학 국제학부	예술대학·사범대학·국제학부 행정실	예술대학·사범대학·국제학부·교육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삭제>	<삭제>	<삭제>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 행정실	법학전문대학원·특허법무대학원·법과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국가정책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간호대학 행정실	의과대학·간호대학·보건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 행정실의 위치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7](개정 2008.2.29, 2009.2.23., 2012.2.27., 2015.4.14. 2020.9.8., 2020.12.29., 2022.8.31)

대학(원)의 분장사무(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대 학(원)	행 정 실	1. 입학·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입시전형계획 수립 및 시행
		3. 학적관리 및 수업·성적·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생 병사사무에 관한 사항
		7. 학생활동 지도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8. 장학사업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9. 보안·관인관수·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회계 관리
		11. 재산(청사 포함) 및 물품관리
		12.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3. 대학(원) 부속시설의 행정지원 및 운영 감독
		14. 제증명 발급(의과대학·간호대학에 한함)
		15. 학술 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16.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사항(대학원에 한함)
		17. 연구 및 교육 조교에 관한 사항(대학원에 한함)
		18. 기타 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아래 업무는 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에 한함
		19. 대학원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료 후 연구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8](개정 2008.2.29, 2008.8.21, 2009.2.23, 2009.7.1, 2010.2.26, 2010.12.29, 2011.5.31, 2012.2.27, 2013.12.30, 2014.4.11, 2014.8.28, 2014.12.16., 2015.6.30., 2016.6.1., 2017.2.28., 2017.6.12., 2017.11.20., 2019.9. 10., 2020. 2. 26. 2020. 5.14. 2020.9.8., 2021.4.30. 2021.8.30., 2022.2.28., 2022.5.31., 2023.2.23.)

부속시설 중 각 본부(실) 및 도서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입학본부	입학과	1. 대학(원) 입학전형연구 결과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2. 대학(원) 입학제도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원 전형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입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7.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지도 감독 10. 대학입학전형 결과분석·연구 11. 기타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입시전문위원실	1. 입학사정관전형 모형 연구·개발 및 학생선발 2. 입학사정관전형 안내·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고교 교육환경·교육과정 등 전문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 4.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5. 입학사정관전형 결과분석·연구 6. 입학사정관전형 관련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과	1. 국제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학술교류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3. 외국대학 및 기관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4. 해외홍보,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해외어학연수, 교환프로그램 운영, 해외유학안내 등 각종 외국 대학 및 기관 관련업무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7.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8. 공자학원 관리 지도 9. 대진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지원 10. 국제언어교육원 관리지도 11. 아시아권 국제교류협력센터 관리 지도 12. 기타 총장이 정하는 국제교류 업무
	대진국제개발협력센터	1. 사업 교육 커리큘럼 개발 2.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3.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아시아권국제교류협력센터	1. 아시아권 국제교류 협력사업 개발 및 기획 2. 아시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 3. 아시아권 대학 및 학과 간 네트워크 연계 4. 국제 협력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국제교류본부장이 정하는 국제교류 및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실	1. 교육혁신본부 총무·인사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 및 관리 3. 교육혁신본부 소관 회계 및 물품관리 4. 예산 편성 및 집행,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5. 각종 위원회 및 규정 관리 6. 교육 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7. 대학교육(전공, 교양, 비교과) 혁신 총괄 8. 융복합창의전공(마이크로디그리과정 포함) 운영 및 활성화 9. 대학교육 효과성 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 10. 대학교육(교과/비교과)의 질 관리 11. 대학교육 정책방안 연구 12. 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3. 백마교양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융합교육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교육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타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교양 교육센터	1. 교양교육과정 연구·기획 2.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교양·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4.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 5. 책임교수회의 및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운영 6. 대내·외 교양교육 관련 사업 계획 및 집행 7.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교양 파트 관련 업무 8.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교수 학습지원 센터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총괄 2. 학내 전기관 대상 기관별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통합 컨트롤 타워 중심 역할 3. 교수/학생 역량진단 및 분석 4. 대학 교수학습 성과 보고 및 운영 5. 성적 정교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데이터 관리 6. 교수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전국/충청권역 대학 교수학습센터 관련 업무 8.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대학원격 교육지원 센터	1. 이러닝지원팀/콘텐츠지원팀 실무 총괄 2.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총괄 3. 강의 녹화 스튜디오 구축·운영 관리 4. 위원회 운영 및 이러닝 사업기획 총괄 5. 대내·외 이러닝 관련 사업 운영 관리 6. 콘텐츠지원팀 실무 총괄 지원 7.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총괄 8. 원격수업 교수학습역량 강화 기획·연구 9. 권역센터 평가보고서 및 성과지표 관리 등 사업 운영 관리 10. 대학원격교육협의체 운영 관리 11.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화 본부	정보화 기반실	1. 대학정보화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2.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심의 3.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4. 정보화 자원의 체계적 관리 5.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정보화 6.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체계의 구축 운영 7. 정보보안 업무추진 및 세부 계획 수립 8. 사이버 안전센터 관리 9.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화 지원실	1. 문서 및 관인관수 관리 2. 정보화본부 회계 및 재산 (청사 및 물품)관리 3. 대·내외 정보(보호)교육 지원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4. 학내 정보서비스 지원(PC, 네트워크 등) 5. 지원서비스(기관홈페이지, 웹메일 등) 관리 6. 학내 공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7. 학내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 지원 등
지역협력본부	지역협력실	1. 지역협력본부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지역협력본부 관인관수 관리 3. 각종 위원회 및 규정 관리 4. 회계(대학회계, 사업비 등) 및 물품관리 5. 지역협력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지역협력본부 관련 대내·외 통계 및 평가 업무 7.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8. 평생교육원 지도 관리 9. 기타 지역협력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센터	1. 본교의 국·내외 사회공헌 업무 총괄 2. 사회공헌활동 계획 및 정책수립 3. 학내외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4. 사회공헌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사회공헌활동 실적관리, 인증서 발급 6.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 7.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관련 사업 발굴 및 기획 8. 학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 본 부	안전관리실	1. 환경관리계획수립 및 시행 2. 폐기물(지정, 일반, 의료)관리 3.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4. 안전점검의날 행사 계획 수립 5. 안전관리본부 일반사무,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계획 수립·시행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8.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집체교육 시행 9. 관리감독자 및 해당 근로자 현황 관리 10.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1. 안전관리본부 제 규정 관리 및 기획 업무 12.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행 13. 연구실험실 및 연구활동조작자 안전관리 14. 방사선 실험실 및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15. LMO 연구시설 등록 및 수출입 신고
	총괄지원본부	1. 총괄지원본부 운영 2. 총장 일정계획 수립 및 총장 수행
융복합 과학원	행정 지원실	1. BK21 사업 관련 대학원 융복합 혁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BK21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BK21 사업 관련 제 규정 관리 4. 융복합과학원 제 규정 관리 및 기획 업무 5. BK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중앙관리 및 집행 6. 소관 위원회 관리 7. 관인관수 및 물품 관리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삭제>	<삭제>	<삭제>
도서관	학술정보 지원과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회계 및 재산(청사 및 물품)관리 4. 도서선정 및 구입 5. 도서의 분류·정리 및 목록 작성 6. 도서관 전산업무 7. 도서관 기획·홍보업무 8. 일반열람실 관리 9.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술정보 운영과	1. 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반납 업무 2. 자료실 관리 및 운영 3. 전자매체자료의 관리 및 운영 4. 고문헌 자료 정리 및 운영 5. 도서관서비스(강의지원, 상호대차, 이용자교육) 실시 6.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 7. 분관 운영 8. 이용상담 및 안내

[별표 8-2](신설 2022.2.28.)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분장사무(제12조제5항 관련)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DSC 사무국		1.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운영 2. GURU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 지역혁신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4. 지역협업·사업추진·운영·성과관리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 5. 기타 지역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학교육 혁신본부	총괄대학 운영 지원실	1. 공유대학 교육혁신 계획 수립 2. 공유대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공유대학 전공·교양 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 공유대학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5. 리빙랩 교육과정 및 사업 기획·운영 6. 지역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사업 기획·운영 7. 기타 대학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업비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0. 사업비 감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1. 총무·인사에 관한 사항 12. 대학교육혁신본부 주요 위원회 운영 13. 기타 총괄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모빌리티소재 부품장비 사업본부	사업운영지원실	1.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 총괄관리 2.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기업·산업트랙 R&D 및 공모사업 추진 4. 참여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5. 사업본부 행정, 인사, 예산관리 6. 소과제 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7. 기타 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모빌리티ICT 사업본부	사업운영지원실	1. 모빌리티ICT분야 사업총괄관리 2. 모빌리티ICT분야 사업 참여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유대학 모빌리티ICT융합학부 및 학부 산하 4개 융합전공 운영 및 관련 인력양성과제 운영 지원 4. 모빌리티ICT분야 선도기술개발과제, 기업지원과제, 창업생태계 조성과제 운영 지원 5. 모빌리티ICT사업본부 행정, 인사, 예산관리 6. 모빌리티ICT분야 사업 성과 분석, 관리 및 신규 사업 기획 7. 각종 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9]<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10.2.26, 2011.2.22, 2011.12.28, 2013.2.22, 2014.2.17, 2015.2.16, 2016.2.19, 2017.2.28, 2018.2.28, 2019. 8. 6, 2020. 2. 26, 2020.12.29, 2021.4.30, 2021.8.30., 2022.5.31., 2022.11.2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제19조제1항 관련)

1. 대학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3	2022	2021	2020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9	39	39	39	156	
	영어영문학과	74	74	74	74	296	
	독어독문학과	34	34	34	34	136	
	불어불문학과	27	27	27	27	108	
	중어중문학과	37	37	37	37	148	
	일어일문학과	22	22	22	22	88	
	한문학과	21	21	21	21	84	
	언어학과	20	20	20	20	80	
	국사학과	19	19	19	19	76	
	사학과	28	28	28	28	112	
	고고학과	18	18	18	18	72	
	철학과	32	32	32	32	128	
	소계	371	371	371	371	1,484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29	29	28	28	114	
	문헌정보학과	24	24	23	23	94	
	심리학과	29	29	28	28	114	
	언론정보학과	31	31	31	31	124	
	사회복지학과	22	22	22	22	88	
	정치외교학과	29	29	28	28	114	
	행정학부	60	60	93	93	306	
	도시·자치융합학과	24	24	-	-	48	
	소계	248	248	253	253	1,002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74	74	74	74	296	
	정보통계학과	30	30	30	30	120	
	물리학과	61	61	61	61	244	
	천문우주학과	30	30	30	30	120	
	화학	71	71	71	71	284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3	2022	2021	2020		
	생화학	30	30	30	30	120	
	지질환경과학과	44	44	44	44	176	
	해양환경과학과	30	30	30	30	120	
	스포츠과학과	38	38	38	38	152	
	무용학과	23	23	23	23	92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소계	431	431	431	431	1,724	
경상 대학	경제학과	60	60	60	60	240	
	경영학부	227	227	227	227	908	
	무역학과	45	45	45	45	180	
	아시아비즈니스 국제학과	-	-	12	12	24	
	소계	332	332	344	344	1,352	
공과 대학	건축학과 (5년제)	27	27	27	27	135	건축학과(5년제), 편제정원에 '19학년도 입학정원(27명 포함)
	건축공학과	-	24	27	27	78	
	토목공학과	46	46	46	46	184	
	환경공학과	38	38	38	38	152	
	기계공학부	103	103	103	103	412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37	37	37	37	148	
	선박해양공학과	-	30	34	34	98	
	항공우주공학과	39	39	39	39	156	
	전기공학과	45	45	45	45	180	
	전자공학과	52	52	52	52	208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64	64	64	64	256	
	컴퓨터융합학부	114	114	121	121	470	
	신소재공학과	79	79	79	79	316	
	유기재료공학과	82	82	82	82	328	
	응용화학공학과	81	81	81	81	324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	54	40	40	-	134	
	자율융합시스템 공학과	57	30	30	-	117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3	2022	2021	2020		
	인공지능학과	40	40	40	-	120	
	소계	958	971	985	875	3,816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식물자원학과	27	27	27	27	108	
	원예학과	26	26	26	26	104	
	산림환경자원학과	26	26	26	26	104	
	환경소재공학과	24	24	24	24	96	
	동물자원과학부	59	59	59	59	236	
	응용생물학과	27	27	27	27	108	
	생물환경화학과	28	28	28	28	112	
	식품공학과	27	27	27	27	108	
	지역환경토목학과	26	26	26	26	104	
	바이오시스템 기계공학과	27	27	27	27	108	
	농업경제학과	29	29	29	29	116	
	소계	326	326	326	326	1,304	
약학 대학	약학과	50 {50}	50 {50}	{50}	{50}	100 {200}	-입학정원 · 약학과 6년제 : '23~'22학년도 신입학 각 50명 · 약학과(2+4) : '23~'22학년도 편입학 각 50명
	소계	50 {50}	50 {50}	{50}	{50}	100 {200}	
의과 대학	의예과	110	110	110	110	220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2)입학정원 합
	의학과	<110> -	<110> -	<110> -	<77> {33}	<407> {33}	<>의학과 본과 인원 -’21~’18년 의예과 입학생이 현재 본과학생 { }의학과 학사 편입학 (‘20~’17)
	소계	110 <110>	110 <110>	110 <110>	110 <77> - {33}	220 <407> {33}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2)입학정원 합 <>의학과 본과 인원
생활 과학	의류학과	37	37	37	37	148	
	식품영양학과	33	33	33	33	132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 고
		2023	2022	2021	2020		
대학	소비자학과	24	24	24	24	96	
	소계	94	94	94	94	376	
예술 대학	음악과	37	37	37	37	148	
	관현악과	25	25	25	25	100	
	회화과	26	26	26	26	104	
	조소과	14	14	14	14	56	
	디자인창의학과	25	25	25	25	100	
	소계	127	127	127	127	508	
수리과 대학	수의예과	54	54	54	54	108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2)입학정원 합
	수의학과	<54>	<54>	<54>	<54>	<216>	<>수의학과 본과 인원
	소계	54 <54>	54 <54>	54 <54>	54 <54>	108 <216>	편제정원은 최근 2년 (‘23~’22)입학정원 합 <>수의학과 본과 인원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3	13	13	13	52	
	영어교육과	13	13	13	13	52	
	수학교육과	14	14	14	14	56	
	교육학과	15	15	15	15	60	
	체육교육과	20	20	20	20	80	
	건설공학 교육과	20	20	20	20	80	
	기계공학 교육과	30	30	30	30	120	’23학년도 모집단위 변경 (구, 기계·재료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 공학교육과	30	30	30	30	120	
	화학공학 교육과	15	15	15	15	60	
	기술교육과	30	30	30	30	120	
	소계	200	200	200	200	800	
간호 대학	간호학과	90	90	90	90	360	
	소계	90	90	90	90	360	
생명 시스템 과학	생물과학과	44	45	46	46	181	
	미생물·분자생명 과학과	30	30	31	31	122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편제정원	비고
		2023	2022	2021	2020		
대학	생명정보융합학과	26	26	26	-	78	
	소계	100	101	103	77	381	
자유 전공 학부	인문·사회과학 전공	14	14	14	14	56	
	리더십과조직학 전공	14	14	14	14	56	
	공공안전학전공	15	15	15	15	60	
	소계	43	43	43	43	172	
국가 안보 융합 학부	국토안보학전공	30	30	30	30	120	
	소계	30	30	30	30	120	
	국제학부	20	20	-	-	40	
	소계	20	20	-	-	40	
신입학 정원 소계		3,584	3,598	3,561	3,425	13,867	-편제정원(가포): '21~'20 학년도 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19 건축학 27명 포함
편입학 정원 소계		{50}	{50}	{50}	{83}	{233}	('23~'22) 약학과(50) : 입 학 포함 ('21학년도) 약학과(50): 입 학·편제에 모두 포함 ('20학년도) 약학과(50), 의 학과(33) : 입학·편제에 모두 포함
의학과, 수의학과 소계		<164>	<164>	<164>	<131>	<623>	의학과, 수의학과 입학에 제외, 편제에 포함
합 계		3,634	3,648	3,611	3,508	14,723	-입학정원: 신입학+편입학 -편제정원: 신입학+편입학 +'19건축27+의학·수의학 -'21~'20의예과/수의예과

2. 대학원

■ 일반대학원(총정원제)

○ 일반과정

구분	입학정원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계
석사학위과정	799	802	1,601
박사학위과정	390	393	783
계	1,189	1,195	2,384

○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과 정 명	입 학 정 원			과 정 명	입 학 정 원		
	2023	2022	계		2023	2022	계
의공학과	55	52	107	의공학과	43	40	83
기록학과				보건학과			
언어병리학과				기록학과			
약무임상약학과				언어병리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군사학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과학수사학과			
의생명융합학과				약무임상약학과			
지역사회디자인학과				국제지역학과			
융합기계시뮬레이션학과				국가정책학과			
안전과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여성젠더학과			
여성젠더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바이오SI융합학과				바이오SI융합학과			
리더십융복합학과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기술실용화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학과			
지식재산융합학과							
17개 과정				16개 과정			

○ 학연산협동과정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연구소(원)	입학정원			연구소(원)	입학정원		
	2023	2022	계		2023	2022	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1	41	8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	25	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차통신연구원				한국전차통신연구원			
KT&G R&D본부				KT&G R&D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주)KT산하연구원				(주)KT산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애경산업(주)중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4개 연구소				24개 연구소			

■ 전문대학원

대학원별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명	학과명	2023	2022	2021	계	2023	2022	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00	100	100	300	6	6	12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 기술학과	22	22	22	44	8	8	16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 학과	23	23	23	46	7	7	14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20	20	20	40	5	5	10
계		165	165	165	430	26	26	52

■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입학정원			
	2023	2022	2021	계
경영대학원	92	92	92	184
교육대학원	245	245	245	612
행정대학원	63	63	63	126
보건대학원	37	37	37	74
산업대학원	80	80	80	160
특허법무대학원	34	34	34	68
평화안보대학원	57	57	57	114
국가정책대학원	39	39	39	78
스마트농업대학원	21	21	21	42
계	668	668	668	1,458

※ 계는 2023, 2022년도 편제정원을 의미. 다만 교육대학원은 2.5년제(5학기)로써 2021년 입학정원 122명 포함.

[별표 10]<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10.2.26, 2011.2.22, 2011.12.28, 2013.2.22, 2014.1.15, 2014.2.17, 2014.6.25., 2015.2.16., 2016.2.19., 2016.9.12.,2017.2.28. 2018.2.28., 2019. 8. 6. 2020.2.26., 2020.12.29., 2021.4.30. 2021.8.30., 2022.2.28., 2022.8.31., 2022.11.21., 2023.2.23.>

1. 대학 학 위 종 별(제22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관련)

학위 종별	졸업대학	학 과(부)
문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자기설계전공	고전문화창의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과학전공,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
	연계전공	공통사회, 도덕·윤리, 충청학, 백제학 (인선 2017.3.1.) (선선 2017.3.1.)
교육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헌정보학사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기초과학부,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과학기술전공)
	연계전공	생물정보학(삭제), 통합과학, 기초의과학 [삭제(2015.3.1.)]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무용학사	자연과학대학	무용학과
경제학사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제·무역학부(경제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경영학사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학과('08이전 입학자)
무역학사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무역전공), 무역학과('09이후 입학자)
	연계전공	글로벌이트레이드(삭제)

학위 종별	졸업대학	학 과(부)
공 학 사	공과대학	건축공학과(4년),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밀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정보통신공학부, 공업교육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나노공학부, 바이오응용화학부,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항공우주·선박해양공학부, 유기재료공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공학사	산학융복합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연계전공	나노기술(삭제), 의약화학(삭제), 목조건축및인테리어디자인, 감성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국방무인시스템전공(삭제), 환경 ICT전공, 반도체융합전공
	공유대학	친환경동력시스템전공,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전공,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전공,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 전공, 자율주행 시스템전공,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전공, 차세대통신융합전공, 모빌리티SW/AI융합전공
건축학사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학과
농 학 사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연계전공	과채·특용작물영농창업전공
수의학사	수의과학	수의학과
법 학 사	법과대학	법학부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행정학부, 도시·자치융합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공공안전학전공)
정치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생활과학사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학위 중별	졸업대학	학 과(부)
음악학사	예술대학	음악과, 관현악과
미술학사	예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산업미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군사학사	국가안보 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해양안보학전공(계약학과), 항공우주안보학전공
지역학사	연계전공	미국지역학, 중국통상, 유럽지역학 [학제:2015.3.1.] [학제:2015.3.1.]
식물생명 공학사	연계전공	식물프론티어바이오 [학제:2015.3.1.]
교육공학사	연계전공	교육공학 [학제:2015.3.1.]
환경조경학사	연계전공	환경조경학 [학제:2015.3.1.]
국제학사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신설 2017.3.1.]
	연계전공	국제학
	국제학부	국제학부 <신설 2022.3.1.>
인문콘텐츠학사	연계전공	인문콘텐츠
아시아 비즈니스학사	연계전공	아시아비즈니스
의약생명 학사	연계전공	의약생명학
스마트이트레이드학 사	연계전공	스마트이트레이드전공
정보공학사	연계전공	지식생태전공
언어공학사	연계전공	언어정보처리전공
통일학사	연계전공	통일리더십과개발협력전공 [신설 2017.3.1.]
창업학사	연계전공	미래미래기술창업학전공 [신설 2017.3.1.]
과학기술· 행정융복합학사	연계전공	과학기술·행정융복합전공
바이오AI 융합학사	연계전공	바이오AI융합전공
스포츠심리 상담학사	자기설계전공	스포츠심리상담전공
지식재산학사	연계전공	지식재산융합전공

2. 대학원

■ 석사학위 중별(후드색)

학위 중별	학 과	학위 중별	학 과
문학석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일어일문학과 기록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여성전대학과	공학석사 (주황색)	의공학과 나노기술학과 산업대학원 각 학과 에너지과학기술학과
		농학석사 (담황색)	농학과 산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낙농학과 응용생물학과 농화학과 임산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바이오빅데이터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자원및기술전공)
수의학 석사 (회색)	수의학과	법학석사 (자주색)	법학과 특허법무대학원 각 학과
교육학 석사 (하늘색)	교육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법학전문석사 (자주색)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학석사 (노랑색)	수리학과 물리학과 컴퓨터과학과 지식정보공학과 해운우주과학과 천문·생화학 화학·생화학 생화학 우주·지질학과 기초과학 생명과학 분석과학기술학과(기초과학전공) 의과학 의생명융합학과 수의과학과	행정학석사 (과랑색)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리더십융복합학과
		자치행정학석사 (과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책학석사 (자주색)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정치학석사 (남색)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석사 (연한밤색)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석사 (연한밤색)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붉은밤색)	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이학전문 석사 (노랑색)	신약개발학과	의학석사 (초록색) <삭제>	의학과 <삭제>
체육학 석사 (진녹색)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간호학석사 (살구색)	간호학과
공학석사 (주황색)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유기응용재료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약학석사 (진초록색)	약학과 약무임상약학과
		생활과학석사 (노랑색)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소비자학과

학위 종별	학 과	학위 종별	학 과
학위 종별	선박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과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과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분석과학기술헌학과(응용과학전공)	음악학석사 (분홍색)	음악과, 관현악과
		미술학석사 (밤색)	미술학과, 산업미술학과
		디자인학석사 (밤색)	디자인창의학과
		무용학석사 (주황색)	무용학과
		문헌정보학석사 (흰색)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흰색)	사회복지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보건학석사 (주황색)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국제학석사 (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 국제학과
		군사학석사 (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과
		과학수사학석사 (연녹색)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바이오AI융합학석사 (주황색)	바이오AI융합학과
		국방경영공학석사 (연녹색)	국가안보융합학과 (국방경영공학전공)
	국가안보학 석사 (연녹색)	국가안보융합학과 (국가안보학전공)	안전과학과
	지역사회디자인학 석사 (흰색)	지역사회디자인학과	평화안보대학원 재난정책학과
	기술경영학석사 (주황색)	기술실용융합학과 (기술실용화정책전공, 기술사업화실무전공)	기술실용융합학과 (기술창업전공)
	지식재산융합학석사 (주황색)	지식재산융합학과	

■ 박사학위 종별(후드색)

학위 종별	학 과	학위 종별	학 과
문학박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한 문 학 과 일어일문학과 언 어 학 과 사 학 과 국 사 학 과 고 고 학 과 사 회 학 과 심 리 학 과 기 록 학 과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공학박사 (주황색)	의공학과 나노기술학과 에너지과학기술학과 자율운행시스템공학과
		농학박사 (담황색)	농 학 과 축 산 학 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산림자원학과 나 농 학 과 응용생물학과 농 화 학 과 임 산 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자원및기술전공)
철학박사 (진곤색)	철 학 과	수의학박사 (회색)	수 의 학 과
교육학박사 (하늘색)	교 육 학 과 공업기술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법학박사 (자주색)	법 학 과 특 허 학 과
이학박사 (노랑색)	수 학 과 물 리 학 과 컴퓨터과학과 통 계 학 과 지 질 학 과 천문우주과학과 해 양 학 과 화학·생화학 화 학 과 생 화 학 과 우주·지질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 류 학 과 미생물학과 체 육 학 과 스포츠과학과 과학수사학과 분석과학기술과(기초과학전공) 의과학과 신약개발학과 수의과학과	법학전문박사 (자주색)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행정학박사 (파랑색)	행 정 학 과
		자치행정학박사 (파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책학박사 (자주색)	국가정책학과
		정치학박사 (남색)	정치외교학과
		경영학박사 (연한밤색)	경 영 학 과 회 계 학 과
		무역학박사 (연한밤색)	무 역 학 과
		경제학박사 (붉은밤색)	경 제 학 과 농업경제학과
		의학박사 (초록색)	의 학 과
		약학박사 (진초록색)	약 학 과 약무임상약학과
		간호학박사 (살구색)	간 호 학 과
		보건학박사 (주황색)	보 건 학 과
공학박사 (주황색)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언론학박사 (남색)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흰색)	문헌정보학과

학위 종별	학 과	학위 종별	학 과
	토목공학과	사회복지학박사(흰색)	사회복지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언어병리학박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군사학박사 (연녹색)	군사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미술학박사 (밤색)	산업미술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디자인학박사 (밤색)	디자인창의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무용학박사 (주황색)	무용학과
	전자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국제지역학박사 (노랑색)	국제지역학과
	바이오응용화학학과		
	고분자공학과	생활과학박사 (노랑색)	소비자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바이오AI융합학박사 (주황색)	바이오AI융합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기술경영학박사 (주황색)	지역환경토목학과	국가안보학박사 (연녹색)	국가안보융합학과 (국가안보학전공)
	농업기계공학과		
지식재산융합학 박사 (주황색)	융복합시스템공학과	국방경영공학박사 (연녹색)	국가안보융합학과 (국방경영공학전공)
	분석과학기술학과 (응용과학전공)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기계시스템전공)	창업학박사 (주황색)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기술창업전공)
	화학생물공학과		
	환경IT융합공학과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기술실용화정책전공, 기술사업화실무전공)		
	지식재산융합학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8.12)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 ○ ○ 학과(전공) 제 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 ○ 대 학 장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직인)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 으므로 이를 증명함.	
전 공:	○○대학 ○○학과(학부) ○○전공(○○학사)
복 수 전 공:	○○대학 ○○학과(학부) ○○전공(○○학사)
부 전 공:	○○대학 ○○학과(학부) ○○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과정, ○○○○과정	
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학장 (학위) ○ ○ ○ (직인)	
충남대학교○○ 대학장 (학위) ○ ○ ○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No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 이름	
Date of Birth(Gender)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위 영문명칭	
in 소속학과 영문명칭	
and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위 영문명칭	
in 소속학과 영문명칭	
(Minor: 소속학과 영문명칭)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Micro Degree course: ○○○○ course, ○○○○ course)	
학위수여 일자	
- 	Dean of (소속대학 영문명) <u>(sign)</u>
	Dean of (소속대학 영문명) <u>(sign)</u>
	President <u>(sign)</u>
Diploma No. CNU(B)-1(학위번호)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전	공: ○○대학 ○○학과(학부) ○○전공(○○학사)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과정, ○○○○과정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장 (학위) ○ ○ ○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No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 이름 Date of Birth(Gender)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위 영문명칭 in 소속학과 영문명칭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Micro Degree course: ○○○○ course, ○○○○ course)
학위수여 일자
Dean of (소속대학 영문명)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Diploma No. CNU(B)-1(학위번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평생교육원장 (학위) ○ ○ ○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u>학위등록번호 : 충남대-학점-년도-일련번호</u>	

수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 ○ 학위과정 ○ ○ 학과의 전 과 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수제 호

수 료 증 서

년 월 일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 ○ 학위과정 ○ ○학과 ○ ○ ○ 융합전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수제 호

수 료 증 서

년 월 일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 ○ 학위과정 ○ ○학과 ○ ○ ○ 전공 및 ○ ○ ○ 융합전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너]	학위등록번호 : _____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너]	학위등록번호 : _____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너]		학위등록번호 : _____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을 <u>이수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u>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너]		학위등록번호 : _____	

M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 [NOVEMBER 12, 1234] 형식으로

THE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AND

영문융합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위수여 일자 [NOVEMBER 12, 1234] 형식으로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석사: 은박무늬]

Diploma No. CNUY(M)-1(학위번호)

박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박사: 금박무늬]

박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학과,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박사:금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박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및 ○○융합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박사:금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D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THE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AND

영문융합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위수여 일자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박사:금박무늬] Diploma No. CNUY(D)-1(학위번호)

수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 ○ ○ 학 ○ ○ 학위 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 ○ 전문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전문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전문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M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 [NOVEMBER 12, 1234] 형식으로

THE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위수여 일자 [NOVEMBER 12, 1234] 형식으로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석사:은박무늬]

Diploma No. CNUy(M)-1(학위번호)

박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전문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박사:금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D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NOVEMBER 12, 1234]형식으로

THE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위수여 일자[NOVEMBER 12, 1234]형식으로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박사:금박무늬] Diploma No. CNU9(D)-1(학위번호)

수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 ○ ○ 학 석사학위 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 ○ 대학원장 (학 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 (학 위) ○ ○ ○ (직인)

[별지 제19호 서식] -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대학원, 특허법무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국가정책대학원) (개정 2010.2.26, 2013.2.22, 2013.8.12, 2014.1.15, 2015.6.30, 2020.12.29.)

석제	호
학 위 기	
○ 년	○ 월
○ 일	○ 일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일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별지 제19호의2 서식] - 특수대학원(산업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국가정책대학원, 특허법무대학원, 스마트농업대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2.11.27, 2013.5.24, 2013.8.12, 2014.1.15, 2014.2.17, 2015.1.19, 2015.6.30, 2021.4.30.)

석제	호
학 위 기	
○ 년	○ 월
○ 일	○ 일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 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일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석제	호
----	---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
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 ○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M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THE DEGREE OF

학 문 학 위 평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 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위수여 일자"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석사:은박무늬]

Diploma No. CNUy(M)-1(학위번호)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와 ○○대학교가 맺은 공동학위 협정에 따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과 ○○대학교 ○○대학원의 공동석사학위 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	○○ 대학교 ○○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	○○ 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학 위) ○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 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타대학 석사 무늬]
[석사:은박무늬]	학위등록번호 : _____

M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 UNIVERSITY	
ON THE NOMINATION OF THE FACULTY OF THE JOINT MASTER PROGRAM HEREBY HAVE CONFERRED ON	
영문이름 DATE OF BIRTH: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THE JOINT DEGREE OF	
영 문 학 위 명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 TO PERTAINING GIVEN AT DAEJEO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S OF THE BOTH UNIVERSITIES AND THE SIGNATURES OF THEIR OFFICERS.	
학위수여 일자" [NOVEMBER 12, 1234]형식으로 "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_____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_____ President (sign) _____
	[타대학 석사 무늬]
[석사:은박무늬]	Diploma No. CNU(M)-1(학위번호)